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및 관리

2021년 7월 ~ 2022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021. 7.



목 차

I. TAC 제도 추진 배경 ···································
Ⅱ. '20년도 주요 추진 성과 1
Ⅲ. TAC 제도 시행계획 세부 사항 ······ 2
가. TAC 실시대상 어종 ······ 2
나. TAC 어종 소진 동향 ······ 3
다. TAC 설정 및 배분량4
Ⅳ. TAC 운영 세부 절차 ······ 7
가. 배분량 배정 및 할당 절차 9
나. TAC 소진량 보고 및 관리 등9
다. 혼획어종 TAC 모니터링12
V. 기타 및 행정사항 ········ 15

I TAC 제도 추진 현황

- □ (현황) 선진형 어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99년에 4개 어종, 2개

 TAC(Total Allowable Catch)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
 - * 총허용어획량제 : 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 '21년 현재 TAC 적용 대상을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
 - * (어종)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키조개·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
 - ** (**어종/업종**) (`99) 4/2 →(`01) 7/4→(`02) 8/5→(`03) 9/7→(`07) 10/10→(`09) 11/13→(`21) 12/14
- □ (목표) 『수산혁신 2030('19.2)』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으로 TAC 제도 확대
 -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 : ('20) 29% → ('25) 50% → ('30) 80%

I '20년도 주요 추진 성과

- □ (어종·업종 추가) 키조개 업종(전남 제3·4구 잠수기)을 추가('20.7)하고,
 시범사업 신규 어종(삼치) 추가('19. 갈치·참조기 → '20. 갈치·참조기·삼치)
- □ (제도 개선)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자원관리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 TAC 설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9)
 - *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TAC 어종·업종 지정이 가능토록 수산자원관리법령(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19조의2) 개정('20.9.25 시행)
 - 이를 근거로, 최근 급격히 감소된 **연근해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TAC***를 '21.1월부터 새롭게 적용
 - * (TAC 배정량) 3,148톤, (적용기간) '21.1~'21.6(6개월), (참여어선) 근해자망 429척
- □ (관리 역량 강화) TAC 전담관리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 내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
 - * TAC 참여어업인과 지정 판매장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원관리 정책 교육·홍보 활동 확대
 - 지정 판매장소 내 모니터링 역량 확보 등 TAC 어획 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조사원을 확충('20. 95명→ '21년 120명, 증 25)

- ① (시행시기) `21년 7월에서 `22년 6월까지(1년)
- ② (TAC 설정)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목표값 기준으로 TAC 설정
- ③ (소진량 관리) 과잉어획노력 투입을 방지하고 계획생산을 유도
- ④ (TAC 시범사업) 정식 TAC와 동일한 절차, 방법으로 실시하여 내실화

가 TAC 실시대상 어종

- □ 2021년 7월~2022년 6월 TAC 실시대상 어종 : 12개 어종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 어종 : 8종
 - *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어종 : 4종

대상 어종	관리기관	비고
제주소라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도 시·도지사로 관리권한 이양
참홍어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2012년도 "
개조개	전라남도, 경상남도	2013년도 "
바지락	경상남도	2019년도 경상남도 자체 실시

□ 2021년 7월~2022년 6월 TAC 시범운영 대상 어종 : 3개 어종

대상 어종	대상업종	대상해역	비고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u>대형트롤*</u>	연근해	'22년 TAC 정식 적용 계획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22년 TAC 정식 적용 계획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연근해	'22년 TAC 정식 적용 계획

* 갈치 시범운영 대상으로 대형트롤 업종 추가('21.7~)

나 TAC 어종 소진동향

(단위 : 톤, %)

	2020170 202170		소진동향				
품종명	2020년7월~2021년6월 TAC 배분량	2020년7월~ 2021년4월	2019년7월~ 2020년6월	2018년7월~ 2019년6월	2017년1월~ 2018년6월		
합 계	288,472	147,482 (51.1)	167,727 (54.2)	194,024 (67.0)	265,413 (59.7)		
		73,286	85,540	107,471	125,720		
고등어	123,527	(59.3)	(64.6)	(97.6)	(81.4)		
		18,709	15,678	13,738	11,018		
전갱이	29,424	(63.6)	(51.0)	(94.0)	(38.0)		
		12,446	13,491	15,371	39,113		
붉은대게	25,516	(48.8)	(50.7)	(49.6)	(67.1)		
		3,558	5,071	6,398	5,812		
키조개	8,582	(41.5)	(68.2)	(82.3)	(74.2)		
		776	877	748	1,477		
대게	1,036	(74.9)	(87.4)	(81.6)	(95.4)		
77. 3		3,054	2,062	2,688	4,531		
실 꽃게	5,033	(60.7)	(35.6)	(47.2)	(54.1)		
م حاما	F4 FFF	22,353	28,341	34,541	68,339		
오징어	74,775	(29.9)	(33.0)	(36.6)	(40.0)		
오징어	11 155	7,164	11,084	8,181			
(쌍끌이)	11,155	(64.2)	(96.0)	(48.1)	-		
오징어	1 757	1,006					
(근해자망)	1,757	(57.3)	-	_	-		
도루묵	2,196	2,016	2,102	1,967	5,280		
714	2,190	(91.8)	(74.5)	(41.6)	(60.0)		
 개조개	1,507	748	1,169	1,170	1,644		
/ - 	1,507	(49.7)	(75.4)	(74.5)	(58.9)		
참홍어	447	435	371	319	364		
пол	71/	(97.3)	(98.5)	(99.4)	(98.9)		
제주소라	1,879	1,435	1,254	1,432	2,116		
,,,,	1,0,7	(76.4)	(70.1)	(83.3)	(83.9)		
바지락	1,638	496	687	_	_		
, , ,	1,000	(30.3)	(44.0)				

다 TAC 설정 및 배분량

□ 어종별 TAC 설정

◇ TAC 대상 어종별로 실시한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의 목표값을 기준으로 어종별 TAC를 설정

< 2021년 7월 ~ 2022년 6월 어종별 TAC 설정 >

(단위 : 톤)

					<u> </u>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TA		비고
	410018	71017	`20.7~`21.6	`21.7~`22.6	-, -
총 계 (15종)	18개 업종		289,863	260,966 (83,885)	△10.0%
【해양수	산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합 계		284,392	256,655	△9.8%
	대형선망	근해	123,527		△ 17.7%
	대형선망	근해	29,424		8.0%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5,516	23,273	△8.8%
키 조 개	잠수기	인천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남 연근해	8,582	6,797	△20.8%
대 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036	948	△8.5%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5,033	5,102	1.4%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연근해	74,775	65,384	△ 12.6
오 징 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11,155	13,653	22.4
	근해자망	연근해	3,148		52.4
		그 드 에	89,078	83,834	J∠.4
도 루 묵	중애구외골이중영적인망	동해 연근해	2,196	•	46.0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4종】 * 지자체 별도 수립					
	합계		5,471	4,311	△21.2%
개 조 개	잠수기	부산ㆍ경남ㆍ전남 연근해	1,507	1,056	△29.9%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북위 37도 이북 해역, 흑산도 근해	447	789	76.5%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1,879	975	△48.1%
바지락		경남 거제	1,638	1,491	△9.0%
【시범도입 3종】					
	합 계	T	_	(83,885)	
갈치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연근해	_	(30,126)	시범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_	(27,723)	시범
삼치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	연근해	_	(26,036)	시범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 ② 지자체 관리대상종의 TAC 설정값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도에서 확정 예정
 - ③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참여하는 근해자망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에 대한 3,000톤을 별도 유보
 - ④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중 10,000톤은 유보

⑤ 쌍끌이대형저인망	s, 근 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	량 중 각각 2,231톤(쌍 끌 (기대형저인맹, 959톤(근해자망)을 유보

□ TAC 배분량 배정 기준

- (시도별·업종별) TAC 대상 어종의 최근 3년간 TAC 평균 어획 실적(80%)과 실 조업어선 척수·톤수 가중치 등(20%)을 적용
- 단,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의 오징어 TAC는 업종별 할당비율을 적용. 단, 유보량(해양수산부)은 제외
- * 근해채낚기 40%, 대형트롤 36.7%, 동해구중형트롤 18.3%, 대형선망 5%
-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는 '18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어선별 위판실적, '21년 1월부터 '21년 6월까지 TAC 어획실적으로 어획량 가중치 비율을 산출

【시·도별 배분량 배정 산정방법】

- ① (**어획량 가중치**) TAC 대상 어종의 시·도별 3년간의 평균 어획실적으로 어획량 가중치 비율을 산출
- ② (**톤수 가중치**) TAC 배정 어선 중 실제 조업 어선척수의 비율과 총톤수 비율을 곱하여 톤수 가중치 비율을 산출
- ③ (**시·도별 배정 비율**) 어획량 가중치 비율^①에 0.8을 곱한 소계와 톤수 가중치 비율^②에 0.2를 곱한 소계를 합산하여 시·도별 배정 비율 산출
 - * 다만, **붉은대게**는 어획량 가중치 비율[®]에 0.5을 곱한 소계와 톤수 가중치 비율[®]에 0.5를 곱한 소계를 합산하여 시·도별 배정 비율 산출
- ④ (**시·도별 배정량**) 시·도별 배정 비율^③에 어종별 TAC를 곱하여 시·도별 배정량을 확정
- (어선별) 수산자원의 상태, 과거 어획실적, 어선의 톤수 등 어획 능력과 업종별 수협 조합장 또는 어업관련 단체장의 의견¹⁾, 「수산자원관리법」및「수산업법」위반 전력²⁾ 등을 적용
 - 1) 시·군·구별 배정기준을 기초로 업종별 수협 또는 어업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공청회 또는 할당계획서 등)하여 할당할 수 있음
 - 2) 배분량을 초과한 어획량 및 부수어획량을 환산한 어획량이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공제 등을 하여야 함
 - 3) 생분해성어구사용, 어구실명제 실시,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등을 확대 설정·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TAC 참여어선 선정 기준

- TAC 대상 어종별 대상수역과 업종에 해당하는 어선을 조사하여 시·도에서 TAC 대상어선 명단 작성
- 기존 TAC 참여어선 중, 과거 3년간 TAC 대상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선은 배분량을 할당하지 않음
 - * 당해 연도 배분량을 미할당하는 것으로 TAC 대상어선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 신규 어선의 진입(TAC 대상어선 명단에 기재된 어선에 한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기존 참여어선의 배분량을 전배받은 경우 허용
 - ① 전년 대비 시·도 TAC 배분량이 증가한 경우
 - ② 최근 3년 내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실적이 없는 경우
 -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참여어선에 대해 시· 도별 세부시행계획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 기존 TAC 참여어선의 배분량(동일 톤급의 평균으로 하되, 동일 톤급이 없는 경우 전체 어선의 평균)의 70% 한도 내에서 할당

가 배분량 배정 및 할당 절차

□ 시·도별 및 어선별 배분량의 할당

- ① 해양수산부는 어종별·업종별 TAC 설정량을 배분하여 시·도에 통보
- ② 시·도는 TAC 배분량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포함)에 제출 하고 시·군·구에 어종별·업종별 TAC 배분량을 통보
 - * 수협중앙회는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 에 따른 지정 판매장소의 장에게 관련 내용 통보
- ③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유보량 확보 및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타력적으로 운영
 - * (해양수산부) 오징어 업종에 한해 유보량을 보유하고. 근해자망에 한해 부수어획(고등어. 전갱이 등)에 대한 추가 오징어 유보량을 설정
- ④ 시·군·구는 배분량의 90% 범위 내에서 어선별 할당계획서(어선별 할당기준, 할당 결과 및 할당량 비율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 전년도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내에서 신규진입 및 소진율 제고를 위한 별도유보량을 시·도에서 추가 확보 가능
- ⑤ 시·도는 어선별 할당계획서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포함)로 할당 승인내역 제출
- ⑥ 시·도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를 TAC 참여어업인에게 발급
- ⑦ 시·도간 및 시·군·구간 전배, 추가할당, 어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수행
- 붉은대게는 어업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오징어는 시·도(시·군·구)별로 업종통합관리. 다만, 업종별 전배 시 어업자 단체 또는 어업자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⑧ 감척 대상 어선의 TAC 어종별 할당량은 감척 시 정부 감척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정부 유보량으로 전환

□ TAC 배분량 추가할당 및 전배 방법

- ① 시·도는 어선별 소진율이 90%에 도달한 경우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 개별 유보량(10%)을 추가로 할당
 - 다만, TAC 참여어선의 어업인들(또는 어업인단체)이 동의한 경우나, 일정기간(6개월 이상) 동안 할당받은 수산자원의 포획실적이 없어 회수된 배분량을 재할당할 경우에는 초기 할당기준을 초과한 추가 할당은 가능
 - * 단, 회수된 배분량 재할당 방법은 시·도별 배분계획에 명시 필요
- ② TAC 참여어선의 어업인들(또는 어업인단체) 간에 협의가 되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어업인 개별 유보량(또는 어선 간 배분량)은 전배가 가능
- ③ 시·도는 어종별 소진율이 80%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전배를 해준 어업인의 TAC 배분량을 차년도 TAC 어기 배분량 할당 시에 전배를 해준 TAC 참여어선의 어획실적으로 반영이 가능
- ④ 시·도(시·군·구)는 어종별 최초 배분량에 대한 소진율이 80%에 도달한 경우에 소진율이 낮은 시·도(시·군·구)와 협의하여 TAC 배분량의 상호 조정이 가능
 - * 다만, 참여어업인 간에 협의가 되고,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오징어는 시·도 간에 2회 이상 TAC 배분량 조정 협의를 하여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의 유보량 신청 가능
- ⑤ 해양수산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시·도 및 업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도별 또는 업종별 배분량의 조정이 가능
- ⑥ 시·도 간에 어선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TAC 참여어선의 어종별 TAC 잔여량과 유보량을 전입하는 시·도로 배분량을 조정 배정

- 전출되는 어선의 전출 기준일까지 어획실적을 확인하여 어획실적은 전출 시·도에 남겨 두고, 시·도별 조정(변경)된 배분량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포함)에 보고
- ⑦ 참여어업인이 해당 어종의 TAC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어종의 TAC 잔여량과 유보량을 전출하는 시·도에 남김
 - 전입 시·도는 해당 어선을 TAC 대상 어선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사항을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 포함)에 보고
- ⑧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도는 즉시 포획·채취정지 명령(「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3항)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중앙회 포함)에 보고
- ⑨ 시·도는 배분량을 초과 어획한 어선에 대해서 다음 연도 할당 시 초과량에 해당하는 량만큼을 빼고 할당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⑩ 복수어업허가 어선이 여러 개의 어업으로 동일 TAC 어종을 어획하는 경우 주로 조업하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서만 TAC를 배정

□ TAC 배분량 관리의 특례

- ① 시·도는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선(어업인)이 일정기간(6개월 이상) 경과 하여도 포획 실적이 없는 경우 배분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배분량은 다른 TAC 참여어선으로 재할당이 가능
 - 다만, 시·도에서 배분량을 회수하는 경우 어종별 조업시기를 감안 하여야 하고 재할당하는 경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나 TAC 소진량 보고 및 관리 등

□ 소진량의 보고 등

- ①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선(어업인)은 어획한 TAC 어종을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함
-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선(어업인)은 TAC 할당 어종의 매매 또는 교환 계획, 입항하는 항구, 항구에 양륙하는 량(양륙량), 양륙하는 시간 등 그 내용을 판매장소의 장과 관할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사전에 통보
- ②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선(어업인)은 양륙할 때마다 판매장소의 장에게 포획·채취 실적보고서(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
- ③ 단,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
 - 1. 낙도·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
 - 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 가공업체 대표
 - 3. 외국에 TAC 대상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수산자원조사원
-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을 발급받은 어업인은 즉시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과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 송부
- 포획·채취 실적보고서 및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을 받은 지정판매장소의 장은 어획량을 확인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
- ⑥ 시·군·구에서는 TAC 대상 어종의 포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시·도에 보고
- ⑦ 시·도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TAC 대상 어종의 포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⑧ TAC 대상 어종의 포획·채취 실적이 수산자원조사원이 조사한 소진량 결과와 어업자가 보고한 소진량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결과를 우선으로 함
 - * 수산자원조사원 조사 결과와 어업자가 보고한 소진량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조치사항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에 보고
- ⑨ 복수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TAC 참여어선이 업종(어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어종의 TAC 배분량을 할당받은 경우, 포획·채취한 TAC 어종의 어획량을 실제 포획·채취한 방법(업종)의 TAC 소진량으로 산정
- ⑩ 복수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 하더라도 해당 어종의 TAC를 배정받은 어업의 TAC를 다른 어업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다만, 부수어획 등을 고려, TAC를 배정받지 않은 어업으로 TAC 어종을 부수어획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TAC를 배정받은 어업의 TAC 50% 범위내에서 산정
- ① TAC 참여어업인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은 TAC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어업인이 TAC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종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TAC 소진량으로 산정
 - * 다만, 참여어선이 TAC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하여 TAC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어업허가 변경시점으로부터의 조업실적은 TAC 소진실적에서 제외하고, 다음년도부터 TAC 대상어선에서 제외

□ 소진량 관리 등

< 시·도(시·군·구) >

- ① 입항 사전통보 및 포획·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리 강화
- ② 배분량 초과 우려 어선 및 배분량 초과 어획어선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 및 다음연도 배분량 감축 배정 조치 철저
 - 포획·채취정지명령을 받은 어선이 유보량 할당 및 어선 간 전배 등을 통해 배분량을 추가 할당 받은 경우 포획·채취정지명령 해제 조치

- ③ TAC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및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
- ④ 어선별 TAC 배분·전배·전입·전출 등에 관한 사항 수산정보 업무 포털에 입력 철저
- ⑤ TAC 참여어선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한국수산 자원공단, 수협중앙회,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포함)에 보고

< 수협중앙회 및 TAC 지정 판매장소의 장 >

- ① 수협중앙회(어업안전조업국)는 어선별 어획량·조업위치, 각 지정판매 장소의 위판량 등 수산자원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산자원조사원 에게 제공
- ② 지정판매장소의 장은 TAC 참여어선의 입항사실과 위판량을 관할수산자원조사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참여어선의 위판량을 중량단위(kg)로 정확하게 계측
- ③ 지정판매장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TAC 포획·채취 실적보고 철저

□ 한국수산자원공단

- ① 연간 TAC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비선택적 어법을 사용함으로써 미성어 등을 혼획하는 업종(근해안강망, 대형저인망 등)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방안 포함
- ② TAC 소진량을 수산업무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TAC 배분량 소진율 70% 이상 어선에 대한 보고·관리* 철저
 - * 매주 70% 이상 소진 어선 발생시(소진율 70%, 80%, 90%, 95%, 100% 도달시) 해당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어업인에게 알림

다 혼획어종 TAC 모니터링

□ 위판 어획물 모니터링

- ① (하역참관) 어업인은 입항정보를 조사원에게 제공하고 조사원은 하역 시 현장 참관 및 어획물 확인
 - * 하역장소, 위판장소, 입항시간, 어획물량, 혼획 어획물(상자 0개 또는 0Kg) 정보 제공
- ② (위판 어획물 조사) TAC 대상 어선별 할당받은 TAC 어종 및 부수 어획 어종의 어획량 조사, 생물학적(체장, 체중) 조사
 - * 위판장별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결과 자료 작성하여 공단 본사로 제출
- ** 어선별 어획량 통계 누락 방지를 위해 어획실적 등 다른 지역 조사원 간 공유

□ 사료·기타 어획물 모니터링

- ① (확인증 수령) 사료업체, 양어장 및 가공공장 등의 판매 물량에 대해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거래명세서 수령
- ② (어업인) 시료 발송은 대상어선의 주요 선적지역에서 1년간 매월 5~10개 포장단위로 혼획 어획물을 계획된 날짜에 맞추어 한국수산 자원공단에 제출(업종·지역 수협 협조)

< 혼획어획물 제출 장소 예시 >

- 안강망 :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6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 전남 여수시 남산로 60-22

- 쌍끌이대형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TAC관리팀

- (혼획 어획물 조사) 지역별로 혼획 어획물을 포장단위로(예 : 상자) 제공받아 어획물 분석 실시

< 어업별 조사 방법 >

- (안강망) 대상어선의 주요 선적지역에서 1년간 매월 각 10상자씩 사료상자 내의 TAC 어종 어획비율 산정 및 체장·체중 조사
 - * 어업자협약과 연계하여 기존 제공받고 있는 군산, 여수 지역은 협약 시료로 대체. 그 외 지역은 사료상자 제공 협조 필수
- (쌍끌이대형) 대상어선의 주요 선적지역에서 1년간 매월 총 5상자씩 기타어류 냉동팬의 TAC 어종 어획비율 산정 및 체장·체중 조사
 - * 대형기선저인망수협(또는 협회) 기타어류 냉동팬 제공 협조 필수
- (현장 점검) 사료공장 등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해수부, 공단)

□ 협조 사항

- (어업인) 입항 전 담당 조사원에게 입항, 어획정보를 SMS로 통보, 위판장 외 판매실적에 대한 비지정 양륙어획물 확인증 제출
 - * 하역장소, 위판장소, 입항시간, 어획물량, 사료어획물(상자 0개 또는 0Kg)
- ** 비지정 양륙어획물 확인증, 거래명세서를 지역별 수협 등에 제출
- (근해안강망수협) 월 1회 어업인에게 제출받은 비지정 양륙어획물 확인증, 거래명세서를 취합하여 공단에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지역별·월별 사료 상자 공단에 운송하여 제공
 - * 조사원 근무시간 외 제출서류 : 비지정 양륙어획물 확인증, 거래명세서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지역별·월별 기타어류 냉동팬 공단에 운송 하여 제공

< 모니터링 체계도 >

	입항		하역		판매		보고
어업인	① 2시간 전 입항 알림 (어업인→조시원 문자) 1) 입항항구 2) 입항시간 3) 어획물 종류 (어종별 무게) 4) 시료용 어획물 (상자00개, Kg)	1	포획·채취실적보고서 제출 (어업인→수협)	→	① 사료, 기타어류 시료 상자제공 (어업인 수협) ②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거래내역서 제출 (어업인 수협)	→	
FIRA	입항 문자 열람		① 하역 점검(근무시간내) ② 어획실적확인 및 시진쵤영 ③ 하역물 타지역 이동시 담당 조시원에게 내용공유 (SNS, 메일)		 위판현장 확인 (보고량, 위판량 일치 여부 점검) 사료 및 기타 어류 정밀조사 		주간, 월간 어선별 어획현황 모니 터링 결과 해수부에 보고
근해 안강망 수협					시료 시료 제공 (수협 <i>뉘</i> IRA)		월 1회 비지정 확인증, 거 래내역서 제출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기타어류 시료 제공 (수협 - FIPA)		



□ 시·도(시·군·구)

- '21. 7 ~ '22. 6 TAC, 시험사업 대상어선과 참여어선의 명단 제출 : '21. 6월중(해당 시·도)
 - * 신규 참여어선 수에 따라 시·도별 배분량에 반영 조치
 - * 시범대상 어종의 정식 시행 시 TAC 물량 배정 희망 어선은 시범 실시에 모두 참여하도록 조치
- TAC 배분량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어업 인에게 배분량 할당증명서 발급 : '21. 7월중(해당 시·도)
- 어획된 TAC 대상 어종이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되도록 지도·홍보 : 수시
- 연안 정착성 또는 단일계군 어종 중심으로 지자체의 TAC 관리 기능 강화방안 모색 : 수시
- TAC 참여어업인이 TAC 정책설명회(한국수산자원공단)의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협조 : 수시
-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한 TAC 이행 관리 및 홍보 : 수시

2 수협중앙회 및 TAC 지정 판매장소의 장

- 지정판매장소별 TAC 업무담당자 현황 제출 : '21. 7월중
- 수산자원조사원의 업무수행 협조, TAC 참여어업인을 대상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 수시

③ 한국수산자원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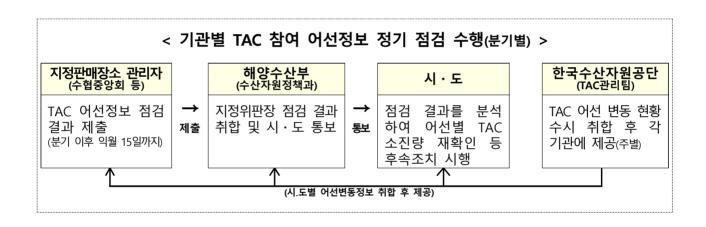
- 지정판매장소별 수산자원조사원 명단(이름, 연락처) 제출 : '21. 6월중
- TAC 참여어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위한 TAC 정책설명회 등 정책 지원 강화, 미참여 어업인 동향을 시·도, 해양수산부에 통보 : 수시
-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에 대한 TAC 이행 관리 및 홍보 : 수시

4 어업관리단

○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하여 TAC 참여어업인 및 지정 판매장소에 대한 할당량 초과 어획여부 등 규정 준수 여부 지도·단속 : 수시

5 공 통

- TAC 참여어선 현행화 정기 점검 실시(분기별)
 - TAC 적용 대상 **어선의 변동 정보**(소유주, 어선번호 등)가 지정판매 장소의 생산자(출하자) 등록정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TAC 참여 어선정보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



참고 1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관련 고시 제2조 관련)

지역별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비고
11개 시·도	121개소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다대공판장, 부산시수협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 '민락위판장, 기장수협 대변위판장, 기장수협 학리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부산위판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8개소
인천광역시	수협중앙회 인천위판장, 인천수협 연안위판장, 인천수협 소래원 판창,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영홍수협 영흥위판장, 경인북부수협 새우젓산지(외포리)위판장	6개소
울산광역시	울산수협 울산수협공판장,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울산수협 강 동위판장	3개소
경기도	경기남부수협 궁평리위판장, 옹진수협 대부(방아머리)위판장, 옹 진수협 대부(탄도)위판장	3개소
강원도	솔혼시수협 청호항위판장, 속초시수협 동명항위판장, 강릉시수협 무로지항위판장, 강릉지수협 사천지항위판장, 동해시수협 목호하 위판장, 삼척수협 사천지항위판장, 동해시수협 워덜우 연원하위판장, 삼척하위판장, 삼척수협 강한구수협 대포수 열 대포장 연안군수열 기사문하위판장, 보석수역 회장 기사문하위판장, 보석수수 협 국가위판장, 가원고성구수협 대진항위판장, 고성구수 연합 거지하위판장, 2성구수협 대진항위판장 수 출항위판장, 국왕수 협 문암1리위판장, 국왕수협 문암2리위판장	21개소
충청남도	서상수협 안흥위판장, 서산수협 모항위판장, 서산수협 채석포위 파창, 태아남부수협 '몽산포위파장, 태아남부수협 마검포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드르니위파장, 태아남부수협 당암위파장 안벼토건 협 백사장위판장, 안면도준협 영목위판장, 내천서부수열 대천항 위판장, 서쳐서부수협 동원위파장, 서천사부수열 대천항 보령수협 '오천사업소위파장, 보령수협 대천항(선어)위파장, 제3·4 구참수기수협 오천위판장, 보령수협 무창포이존계위판장, 서천군 수협 장항위판장, 보령수협 삼길포항(관외)위판장	18개소
전라북도	국산시수협 해망동위팕장,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 부안수협	4개소
전라남도	여수수형 군내인과장, 여수수형 국동(선어)위판장, 목포수형 동 부위과장, 목포수형 서부위판장, 제3·4구점수기수형 국동위판장, 완도금일수형 학선어위판장, 고홍구수형 목동기수형 난로도구형 나로로위판장, 장치군수형 마량(활선어)위판장, 진약군수형 송분 위판장, 신약군수형 학생도위판장, 거문도수형 거문도위판장, 광군수형 법성위판장, 진도군수협 서망위판장, 장흥군수협 정남 진위판장	15개소
경상북도	후포수형 후포위파장, 후포수형 구산위파장, 후포수형 사동위파소 가구수협 간구위파장, 구룡포수혁 구룡포(대게, 활어, 트롤) 위파장 구룡포수협 한미곳위판장, 구룡포수협 장기위판장 포함수협 축도위판장 포함수협 축도위판장, 중변수협 축내위파장, 중변수협 오산위판장, 경주시수협 간포위파장, 영덕부부수협 축사위파장, 울릉군수협 대하위판장, 울릉군수협 전부위판장, 울릉군수협 현포위판장	17개소
경상남도	삼천포수협 삼천포(선어)위판장, 거제수협 장승포위판장, 거제수협 성포위판장, 통영수협 통영위판장, 마산수협 마산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남해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남해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마산위판장, 필치권현망수협 통영위판장, 필치권현망수협 마산위판장, 별치권현망수협 마산위판장, 남해구수협 미조(선어)위판장, 장해시수협 속천위판장, 의창수협 왕원위판장, 의창수협 학골위판장, 의창수협 학골위판장, 사량수협 사량위판장, 하동군수협 노량위	19개소
제주특별자치도	관상 제주시수협 제주위판장, 한림수협 한림위판장, 서귀포수협 수산 물유통센터, 서귀포수협 태흥(남원)위판장 성산포수협 성산포위 판장, 추자도수협 추자항위판장, 모슬포수협 모슬포위판장	7개소

비고

대형트롤어업의 어업자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에서 오징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비지정 위판장 양륙어획물 확인증
1. 어업 허가내역
○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 소:
○ 어업의 종류:
○ 허가번호: (허가기간) 21 ~ 21)
○ 어선명(어선번호):
2. 어획물의 내역
○ 어종별 어획량:
○ 어획물 양륙일시:
○ 어획물의 양륙장소(또는 가공업체명):
○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매매·교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3 포획·채취 실적보고서

포획·채취 실적보고서

수산:	발신:			
어업자 및 어선의 명칭:	앙륙 일시:			
어업허가번호 및 어선등록번호:	양륙장소(농수산물공판장 등):			
어업의 종류:	작성자:			
소속 조합(단체)명:	확인자:			
	위 이(이가)			

(단위: kg)

포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할당받은 배분량	포획량 또는 채취량	누계	잔여량
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참고 4 비지정 판매장소 실적보고 서식(시범사업용)

비지정 판매장소 실적보고(시범사업용)

일시 및 장소 :
월 일 시 분/
기간 :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구역(해구) :

대상 어종	거래처명	거래일	거래량(kg)	거래금액(천원)
zl⇒l mr ∟				
갈치 또는 참조기				

붙임: 갈치, 참조기 포획·채취 실적 증빙 자료(과세자료, 거래 실적 등).

갈치, 참조기의 포획·채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본 자료는 시범사업 대상 어종의 포획·채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임.

참고 5

배분량 할당증명서

년 제 호

배분량할당증명서

1.	어업의 종류 및 어업허가번호
2.	어업자의 성명 및 주소
3.	어선의 명칭 및 등록번호
4.	어선의 제원(諸元)
	총톤수톤 주기관의 출력마력 최대속력노트
5.	무선전신의 연락방법
	긴급호출무선
	호출부호 전신연락 주파수 무선전화주파수
6.	화물의 적재 가능 용량
	종류 수량 선창(船倉) 용량
7.	할당내용
	포획·채취되는 해당 수산자원의 이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배분량(톤)
8.	포획·채취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자
9.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구 분 선명 톤 수 마 력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분량을 할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용)

년 제 호

1. 어업의 종류 및 어업허가번호

배분량할당증명서(시범사업용)

2.	어업자의 성명 및 주	소					
3.	어선의 명칭 및 등록	 번호 _					
4.	어선의 제원(諸元)						
	총톤수톤	주기된	관의 출력	마력	최디]속력	노트
5.	무선전신의 연락방법						
		긴급호	출무선				
	호출부호	전신역	연락 주파수	<u> </u>	무선전.	화주파수 _	
6.	화물의 적재 가능 용	량					
	종류	_ 수당	¥	선창(船倉)	용량	
7.	할당내용						
	포획·채취되는 천 수산자원의 이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배분량(톤	-)
					당해약	면도 어획량*으	으로 한다.
	* 당해연도어획량 : 시범시	·업 중어	보고한 어	획량으로 본사업	시행시	에는 할당비	율에 적용
8.	포획・채취 실적보고	서를 제	출할 자 _				
9.	부속선의 선명 및 제	원					
	구 분	ે -	년 명	톤	수	마	력

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 대상어종은 법적 적용대상이 아니며, 시범사업은 어획량 조사 및 관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등이 목적임

년 월 일

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용

참고 7

포획·채취정지명령서

제 호	☆! +!!	+ T	1 T I M 24 I				
<u> </u>	식·새	H 6	지명령시	1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	성명						
에 한 당을 일정된는 이 급자 -	주소						
어선의 명칭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포획·채취 정지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이름							
정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지기간 동안 해당 수산자원의							리의 정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	શ			

참고 8 TAC 시도별·업종별 배분량 배정 계획

1) TAC 실시대상 어종 : 12개 어종

(단위 : 톤)

구 분	합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해수부
합계	260,966	136,584	5,531	849	0	14,679	6,501	49	8,161	39,204	12,196	3,085	34,127
고 등 어	101,715	82,852									2,873		15,990
대형선망	85,725	82,852									2,873		
유보량	15,990												15,990
전 갱 이	31,779	26,650									640		4,489
대형선망	27,290	26,650									640		
유보량	4,489												4,489
붉은대게	23,273					8,430				14,843			
근해통발	,												
키 조 개 잠수기	6,797						5,989		657		151		
대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948	4		50		14				880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5,102		5,102										
오 징 어	65,384	22,603		764		4,803	85		2,106	21,607	2,106	852	10,458
근해채낚기	22,154	2,761		764		3,205	85		308	13,070	1,109	852	
대형선망	2,311	2,233									78		
대형트롤	20,326	17,609							1,798		919		
동해구트롤	10,135					1,598				8,537			
유보량	10,458												10,458
오징어	13,653	4,458	124						3,149		3,691		2,231
쌍끌이대형	11,422	4,458	124						3,149		3,691		
유보량	2,231												2,231
오 징 어	4,797	17	99	35			427	49	1,515	99	339	1,258	959
근해자망	3,838	17	99	35			427	49	1,515	99	339	1,258	
유보량	959												959
도루묵													
동해구중형 동해구외끌이	3,207					1,432				1,775			
개조개	1 050								1 E 1		005		
잠수기	1,056								151		905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789		206						583				
제주소라 마을어업	975											975	
바지락 잠수기	1,491										1,491		

2) TAC 시범운영 대상 어종 : 3개 어종

(단위 : 톤)

구 분	합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해수부
합 계	83,885	21,054	709	267	25	353	2,519	1,109	25,525	1,243	11,670	19,411	
갈 치	30,126	8,278	189	33	16	138	917	596	7,291	253	2,092	10,323	
근해연승	12,014	81	38	33		138	123	59	364	253	602	10,323	
대형선망	3,444	3,408									36		
근해안강망	6,340		137		16		794	537	4,856				
쌍끌이대형	2,952	1,091	14						589		1,258		
대형트롤	5,376	3,698							1,482		196		
유보량		8,278	189	33	16	138	917	596	7,291	253	2,092	10,323	
참 조 기	27,723	740	434	234	9	215	1,602	513	11,904	990	1,994	9,088	
근해자망	22,534	197	344	234		215	1,076	80	8,808	990	1,542	9,048	
근해안강망	3,689		87		9		526	433	2,634				
쌍끌이대형	355	163	3						115		74		
외끌이대형	1,145	380							347		378	40	
유보량													
삼 치	26,036	12,036	86						6,330		7,584		
대형선망	5,150	5,072									78		
쌍끌이대형	19,051	6,964	86						6,330		5,671		
서남해구쌍 끌이중형	1,835										1,835		
유보량													